

# 정신의료기관 평가와 인증 기준의 공간 및 요구사항 연구

A study on the space and requirements of evaluation and certification criteria for psychiatric institutions

이은진\* Lee, Eun Jin | 이승지\*\* Lee, Seung Ji

## Abstract

**Purpose:** The study aimed to extract the space mentioned in the criteria for evaluation and certification of psychiatric institutions in which the most specific standards for medical services of psychiatric institutions are prepared, and to organize and analyze the requirements. **Method:** The implied space is derived by analyzing the evaluation and certification criteria. The derived space is re-classified by departments of the hospital, and the requirements are organized and analyzed. **Results:** First, a total of 41 spaces were derived. The derived spaces can be considered as spaces to be treated as important in psychiatric institutions. Second, as a result of reclassifying the derived space by department, 10 spaced for the hospital as a whole, 10 for wards, 12 for central/outpatient departments, 5 for pharmaceutical departments, 2 for catering facilities, and 2 for facilities. Third, if organized by psychiatric institution, there is a total of 40 spaces for psychiatric hospitals according to certification criteria, and according to evaluation criteria, there is 38 spaces for psychiatric hospitals and departments and 19 spaces for the clinics. The difference between the certification and evaluation criteria of psychiatric hospitals is insignificant. In order to promote the qualitative improvement of psychiatric institutions, it is necessary to gradually strengthen from the certification criteria. Fourth, the requirements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a psychiatric institution were very limited to emergency exits and treatment rooms. It is necessary to prepare the space requirements for other rooms in consideration of the behavior of the mentally ill. **Implications:** The derived spaces and requirements can serve as practical reference materials for practitioners preparing to receive certification and evaluation of psychiatric institutions. In addition, it has meaning as a basic data for estimating the level of space and requirements of psychiatric institutions that are currently required in Korea.

주제어: 정신의료기관, 정신병원 인증, 정신의료기관 평가

Keywords: Psychiatric institutions, Mental hospital certification, Psychiatric institution evaluation

## 1. 서론

### 1.1 연구 배경과 목적

현대인의 정신질환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 보고서 (보건복지부, 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정신장애 평생유병률이

27.8%이며, 이는 4명 중 1명 이상이 생애에 1번 이상 우울장애, 불안장애, 알코올 사용장애 등의 정신장애를 경험함을 의미한다. 또한, 최근 10년 사이 건강보험 가입자 중 1년간 정신질환으로 진료받은 환자 수는 연평균 5.2% 증가하였고 동기간 중 진료비 증가율은 10.3%로서 정신의료서비스의 이용도 증가하고 있다(김동겸, 2021: 1).

우리나라는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을 계기로 정신질환자의 폐쇄적인 사회적 환경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개방적인 의료서비스 환경으로 확장되었다(김상복, 2017: 153). 최근에는 위와 같

\* 회원, 사원, (주)spaceDBM (주저자: puffin11@naver.com)

\*\* 이사, 교수, 헬스케어디자인전공, 인천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교신저자: seungji@iccu.ac.kr)

이 정신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관심이 확대됨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2008년 정신보건법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으로 변경) 개정을 통한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2010년에는 의료법 개정을 통하여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에 대한 인증제가 도입되었다.

정신의료기관은 장기 입원환자가 많아 재원기간 동안의 의료 환경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급성기 의료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11). 정신질환은 다른 질환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리적 환경의 영향이 큰 질병으로, 정신의료기관의 환경은 환자와 의료진의 기능 수행에 있어 중요하지만, 여전히 과소평가되고 연구가 제한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이다 (Shepley & Pasha, 2017: 5). 따라서 근거에 기반한 가이드라인 등이 미흡하고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법적인

시설기준(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11조)은 필요한 실의 종류와 설치 유무를 제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정신의료기관 전반에 관하여 가장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정신의료기관 평가와 인증 기준에서 언급되는 공간을 추출하고 그 요구사항을 정리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신의료기관의 평가와 인증 기준에서 도출해내는 공간과 요구사항은 평가와 인증의 목적인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진다. 그 중 정신의료기관에 특수하게 요구하는 사항을 분석하여 봄으로써 현재 우리나라의 정신의료기관을 평가 및 인증을 시행하는 기관이 요구하는 정신의료기관의 공간적 요구사항의 수준을 가늠해 보는 기초자료로서 의미가 있다.

[표 1] 정신의료기관별 법적 필요 시설 및 기준

구분	시설기준			시설규격 및 장비
	정신병원	설치과	정신건강의원	
입원실	○	○	○	- 3층 이상 또는 지하층에 설치 불가 (내화구조 경우 3층 이상에 설치 가능) - 1인실 10㎡이상, 다인실 6.3㎡/인 (최대 6병상). 병상 간 이격거리 1.5m 이상 - 개방병동이 아닌 경우, 입원환자 50명당 보호실 1개. 보호실에는 안전장치 - 입원실 내 시설 및 비품의 위험 예방 - 병동 내 경보연락장치 및 전화 설치 - 입원환자 50명 이상의 경우, 입원실의 10/100 이상 개방병동 운영 - 손씻기 및 환기 시설/장비, 화장실 설치 - 300병상 이상 정신의료기관에는 격리병실 1개 이상 설치 - 그 외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의 요양병원의 입원실 시설규격 준수
응급실 또는 야간진료실	○	○		- 외부로부터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 - 구급용 시설·응급처치장비·의약품 및 신체보호에 사용되는 장비와 병상 구비
진료실	○	○	○	- 비상경보장치 설치, 비상문, 비상대피공간, 개인방호도구 중 하나 이상 - 입원환자 100명 이상 정신병원 또는 설치과는 개인면담실 및 집단치료실 설치
뇌파검사 및 심전도실	○	○		- 필요한 시설·장비 구비
상담실	○	○		- 적합한 시설
재활훈련실	○	○		- 생활훈련 또는 작업훈련에 필요한 도구·장비·안전장치 구비
임상검사실	○	○		- 필요한 시설·장비 구비
방사선실	○	○		- 방사선 촬영투시 및 치료를 하는 데 지장이 없는 면적, 방호시설 - 방사선 사진필름을 현상·건조하는 데 지장이 없는 면적, 건조실 - 방사선 사진필름을 판독하는 데 지장이 없는 면적, 판독실
조제실	○	○		- 조제대 등 필요한 시설 구비
소독시설	○	○		- 자재 및 소독용 기계기구 구비, 위생재료·봉대 등 집중 공급시설 구비
급식시설	○	○		- 조리실 : 식품 운반/배식 편리한 곳에 위치, 식품 위생 처리 설비와 공간 구축 - 식품저장실 : 환기와 통풍 잘되는 곳, 위생 보관 시설 - 급식 관련 종사자를 위한 준비실, 탈의실, 옷장
세탁물처리시설	○	○		-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시설과 규모 준수
기타				- 입원실이 있는 경우, 환자 편의시설(식당, 휴게실, 욕실 및 화장실 등) 설치 - 급식 또는 세탁물 처리는 의료기관이 함께 하거나 외부용역으로 처리 가능 - 설치과의 경우, 응급실 또는 야간진료실, 각종 검사실, 소독시설, 급식시설 등은 다른 진료과와 함께 사용 가능

출처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3]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기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 1.2 연구 범위와 내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2목에서 정의하는 정신질환자는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정신질환자를 위한 시설은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4목-7목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정신의료기관 외에,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요양시설과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정신재활시설을 통칭하여 정신건강증진시설이라고 한다.

이 중 이 연구는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5목에서 규정하는 정신의료기관의 유형은 정신병원, 정신과의원,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세 가지이다.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인 의료평가인증원의 정신의료기관 평가와 인증 기준에서는 이를 각각 정신병원, 정신건강의과, 설치과로 표기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용하고자 한다.

2장은 이론적 고찰로서 정신의료기관의 평가와 인증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여 연구의 기준을 마련한다. 2021년 현재 정신의료기관 평가는 4주기가 시행 중으로 '4주기 정신의료기관 평가 기준 (2021년 6월 개정)'을 분석하였으며, 정신병원 인증은 3주기가 시행 중으로 '3주기 정신병원 인증기준 (2021년 5월 개정)'을 각 분석대상으로 한다. 3장에서는 정신의료기관 인증기준을 중심으로 공간을 도출한다. 4장에서는 도출된 공간을 병원의 부서 중심으로 재분류한 후, 평가와 인증의 요구사항을 정리하여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5장 결론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한다.

## 2.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 평가와 인증

### 2.1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

정신의료기관은 「의료법」을 근거로 하는 기관이지만,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제시한 시설과 장비의 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같은 의료법 제3조2항3목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분류되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은 의료법 제3조2에서 30병상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정신병원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50병상 이상으로 규정된다. 구체적으로 첫째, 정신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병상이 50병상 이상이면, 그 중 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 수가 50%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둘째,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이하 설치과)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병상이 50% 이하인 경우가 해당되며, 셋째, 정신과의원은 입원실을 두는 경우 50병상 미만을 기준으로 한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의 [별표 3]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기준에서 규정하는 각 정신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실들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표 1]과 같다. 특히 정신건강의원도 50명 미만의 환자가 입원하는 의료기관임에도 불

구하고, 상담실 및 재활훈련실 등이 필요시설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별도의 실로 구분되어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경우 보호실, 격리병실, 개인면담실, 집단치료실을 갖추도록 하였고, 급식시설은 조리실과 식품저장실로 구분하여 시설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2.2 정신의료기관 평가

2008년 정신보건법 (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평가를 위한 객관적인 지표가 없어 시행이 늦어지다가 (대한정신건강재단, 2021: 1), 2012년부터 평가가 시작되었다. 평가는 입원병상이 있는 정신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3년 주기로 시행되어 2021년 4주기까지 시행되었다.

정신의료기관 평가의 추진 목적은 1)정신의료기관의 질 관리에 대한 동기부여 및 질적 수준 향상의 기반 마련, 2)정신질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질 관리체계 구축, 3)정신의료기관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계기 마련이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서 규정하는 평가범위는 1)시설 및 장비, 2)종사자 및 자격, 3)진료·요양 또는 재활 등의 운영 현황 및 실적, 4)기타 운영 및 관리의 적정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권리고지 및 시설운영 상 의무이행절차 준수여부 등)이다.

평가 기준은 환자안전보장이라는 기본가치체계와 환자진료체계, 조직관리체계 3개의 영역으로 구성된다. 정신과의원은 10개 장, 24개 기준, 78개 조사항목으로, 설치과는 11개 장, 34개 기준, 130개 조사항목으로, 정신병원은 11개 장, 46개 기준, 201개의 조사항목으로 각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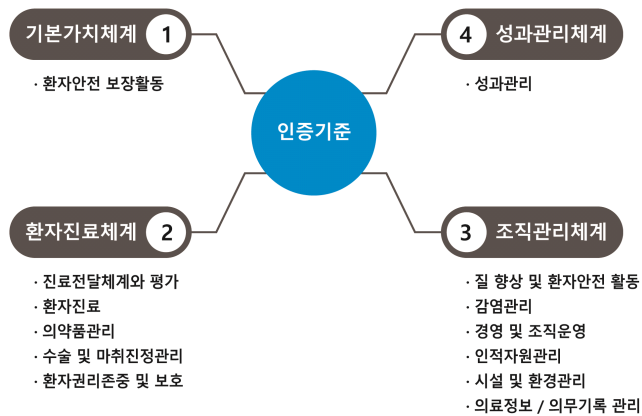
### 2.3 정신병원 인증

인증은 정신병원에 국한된 것이 아닌 병원급 의료기관 전체에 대한 인증제도의 일환으로 정신병원에 대한 인증이 시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법」 제58조에 근거한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과 관련하여 공표된 인증기준에 대한 충족 여부를 조사해 일정 수준을 달성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4년간 유효한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로서, 의무가 아닌 자율인증제이다<sup>1)</sup>. 2013년 4년 주기로 인증이 시작되어 2021년 3주기까지 시행되었다.

1) 2010년 의료법 개정으로 정신병원이 병원의 종류 중 요양병원에 포함되었는데, 2015년부터 요양병원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함에 따라 정신병원 역시 의무인증 대상이었다. 따라서 정신병원이 요양병원에 포함되기 전인 2010년 이전에 개설된 정신병원은 평가 대상이 되고, 2010년 이후에 개설된 정신병원은 인증 대상이 되었다. 즉,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일부는 인증을, 또 일부 정신병원과 설치과, 정신건강의원도 평가를 받는 등의 혼란이 유발되었다. 이러한 혼란은 2020년 의료법 개정으로 정신병원 종별이 신설되면서 개선되었다. 정신병원이 별도의 종별로 분리되면서 의무인증 대상에서도 제외되었다. 즉 정신병원도 평가 대상이 되었고 인증은 자율적으로 받게 되었다.

[표 2] 정신의료기관의 평가와 정신병원 인증

기준	평가			인증
	정신건강의원	설치과	정신병원	정신병원
영역	3	3	3	4
장	10	11	11	12
기준	24	34	46	50
조사항목	78	130	201	223
도식	기본가치 측면   환자진료 측면   조직관리 측면 1. 환자안전보장활동   2. 진료전달체계와 평가   6. 환자안전사건 관리 3. 환자진료   7. 감염관리 4. 의약품 관리   8. 인적자원 관리 5. 환자권리 존중 및 보호   9. 시설 및 환경 관리 10. 의료정보/의무기록 관리 I. 기본가치 체계   II. 환자진료 체계   III. 조직관리 체계	기본가치 측면   환자진료 측면   조직관리 측면 1. 환자안전보장활동   2. 진료전달체계와 평가   6. 질 향상 및 환자안전활동 3. 환자진료   7. 감염관리 4. 의약품 관리   8. 경영 및 조직운영 5. 환자권리 존중 및 보호   9. 인적자원 관리 10. 시설 및 환경 관리 11. 의료정보/의무기록 관리 I. 기본가치 체계   II. 환자진료 체계   III. 조직관리 체계	기본가치 측면   환자진료 측면   조직관리 측면   성과관리 측면 1. 환자안전보장활동   2. 진료전달체계와 평가   6. 질 향상 및 환자안전활동   12. 성과관리 3. 환자진료   7. 감염관리 4. 의약품 관리   8. 경영 및 조직운영 5. 환자권리 존중 및 보호   9. 인적자원 관리 10. 시설 및 환경 관리 11. 의료정보/의무기록 관리 I. 기본가치 체계   II. 환자진료 체계   III. 조직관리 체계   IV. 성과관리 체계	
		- 6. 환자안전에 대하여 질 향상 내용 추가 - 8. 경영 및 조직운영 장 추가	- 성과관리 영역 추가 - 12. 성과관리 장 추가	



[그림 1] 인증기준의 영역  
(출처: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 <https://www.koiha.or.kr>)

의료기관 인증기준은 의료법 제58조에 근거하여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 의료기관의 조직·인력관리 및 운영, 환자만족도를 포함한다. 인증 기준도 평가기준과 같이 기본가치체계, 환자진료체계, 조직관리체계의 영역에 성과관리체계가 추가되어 4개 영역, 12개 장, 50개 기준, 223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된다. 급성기병원의 인증기준이 4개 영역, 13개 장, 92개 기준, 512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되는 것에 비하면, 정신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절반 이하의 조사항목으로 구성된다. 이는 수술 및 시술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정신의료기관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이다. 또한, 동일한 기준에 대해서도 조사항목을 통합하고 축

소한 경향이 있는데, 이는 수가 등의 면에서 열악한 정신의료기관의 실태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 3. 인증기준 내 공간 도출

#### 3.1 공간 도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신의료기관의 평가와 인증 모두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이 동일한 상황에서 인증은 평가에 비하여 더 많은 기준과 평가항목을 가진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인증기준을 바탕으로 공간을 모두 도출한 후 다음 절에서 이를 정신의료기관의 위계별로 재정리하고자 한다. 인증기준에는 없지만 평가기준에는 있는 유일한 예는 흡연실로서, 이를 포함하여 도출하였다. 도출하는 공간은 독립적인 실뿐만 아니라 위해도구 보관장소 또는 퇴원 정보 제공 장소 등과 같이 특정 행위를 위한 물리적인 범위를 가지는 공간을 모두 포괄한다. 따라서 각 병원에 따라 입원실에서 퇴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와 같이 공간이 중복될 수 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제시하는 인증기준은 각 장별로 '인증기준'이 제시되어 있고, 각 인증기준별로 해당 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항목'이 제시된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항목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기준의 이해'가 추가적으로 제시되는 구성을 가지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50개의 인증기준 - 223개의 조사항목 - 기준의 이해 모두를 참고하여 공간을 추출하였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 인증기준 : 1.2 정신과적 치료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 2) 조사항목 : 2. [필수] 병동 내 위해도구를 안전하게 관리한다.
- 3) 기준의 이해: 2) [필수] 규정에 따라 병동 내 위해도구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수량을 확인한다.

위와 같이 단계별로 구성을 참고하여 위의 내용으로부터 '위해도구 보관장소'를 추출해내는 방식이다.

[표 3] 정신병원 인증기준 내 공간

영역	장	인증기준	공간
I. 기본 가치 체계	1. 환자안전 보장활동	1.2. 정신과적 치료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 위해도구 확인장소 - 위해도구 보관장소
		1.4. 낙상 예방활동을 수행한다.	- 낙상발생 가능 장소
II. 환자 진료 체계	2. 진료전달 체계와 평가	2.3.2. 검사실 안전관리 규정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한다.	- 검체검사실 - 영상검사실
		3. 환자진료	3.1.3.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한다.
	3.1.5. 작업치료를 수행하는 체계를 갖추고 이를 운영한다.		- 작업치료실 (작업장)
	3.1.6. 특수치료를 안전하게 시행한다.		- 특수치료실
	3.2.2. 적절하고 안전한 격리 규정이 있고 이를 준수한다.		- 격리실 (보호실, 안정실 등)
	4. 의약품 관리	3.2.3. 적절하고 안전한 강박 규정이 있고 이를 준수한다.	- 강박실 (보호실, 안정실 등)
		4.2. 모든 의약품을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관한다.	- 의약품 보관실 - 병동 내 의약품 보관장소 - 주사실 - 마약류 및 임시마약류 보관장소 - 고위험의약품 보관장소 - 주의를 요하는 의약품 보관장소
	4.3. 의약품을 안전하게 처방하고 조제한다.		- 의약품 조제실
	5. 환자권리존중 및 보호	5.2. 환자의 불만 및 고충을 관리한다.	- 불만 및 고충 처리 접수장소
	III. 조직 관리 체계	7. 감염관리	7.1. 감염예방 및 관리를 위한 운영체계가 있다.
7.2. 의료기기의 세척, 소독, 멸균과정과 세탁물을 적절히 관리한다.			- 소독물품 보관실(중양공급실 내) - 오염물품 반납 창구 - 멸균 및 소독 완료 물품 불출창구 - 세척/소독/멸균실 - 세탁물 수집 장소 - 세탁물 보관 장소 - 린넨실
			7.4. 급식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을 관리한다.
9. 인적자원관리		9.4. 의료기관은 폭력을 예방하고 올바른 조직문화를 구축한다.	- 진료실
10. 시설 및 환경관리		10.2. 설비시스템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한다.	- 전기실 - 발전기실
		10.3. 정신의료기관의 법적기준을 준수한다.	- 입원실 - 보호실 (중복) - 상담실
		10.4. 위험물질 관리를 위한 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한다.	- 유해화학물질 보관공간 - 의료폐기물전용 보관창고
		10.6. 화재안전 관리활동을 수행한다.	- 대피로 - 비상구 - 금연구역 - 흡연실
11. 의료정보 / 의무기록관리		11.1. 의료정보 / 의무기록에 대한 규정을 수립하고 관리한다.	- 의료정보/의무기록 보관실
		11.3.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을 위한 체계를 운영한다.	- 개인정보보호 위한 접근통제구역

인증기준에 내포되어 있는 공간을 추출한 결과, 총 41개의 공간이 도출되었다. 제1영역 기본가치체계의 1장 환자안전보장활동과 관련하여 위해도구 확인장소, 위해도구 보관장소, 낙상 발생가능 장소로 3개의 공간이 도출되었다. 제2영역 환자진료체계의 2장 진료전달 체계와 평가와 관련해서는, 검체검사실, 영상검사실 2개가, 3장 환자진료와 관련해서는 치료프로그램실, 작업치료실, 특수치료실, 그리고 보호실, 안정실 등으로 명명되기도 하는 격리실과 강박실의 총 5개가 도출되었다. 4장 의약품 관리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의약품 보관실 외에 마약류, 고위험 의약품, 주의를 요하는 의약품 등의 의약품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실 또는 장소들, 그리고 의약품 조제실, 주사실을 포함하여 총 6개 공간이 도출되었다. 5장 환자권리존중 및 보호 관련해서는 불만 및 고충처리 접수장소 1개 공간이 도출되었다. 제3영역 조직관리체계의 7장 감염관리와 관련해서는 감염환자 격리실 외에도 감염원을 차단하고 관리하기 위한 중앙공급실 내 소독물품 보관실, 별도의 오염물품 반납창구와 멸균 및 소독 완료 물품 불출창구, 세척/소독/멸균실, 세탁물 수집장소와 보관장소, 급식서비스의 감염을 관리하기 위한 식재료 보관장소, 조리장 등 총 10개 공간이 도출되었다. 9장의 인적자원관리와 관련해서는 의료진을 보호할 수 있는 진료실 1개가 도출되었다. 10장 시설 및 환경관리와 관련하여 설비와 관련된 전기실, 발전기실, 법적기준이 제시된 입원실, 보호실(3장과 중복되어 개수 산정에서 제외), 상담실, 그 외 위험물질 관리를 위한 보관장소와 화재안전을 위한 대피로 등 총 10개 공간이 도출되었다. 11장 의료정보/의무기록 관리와 관련하여 보관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접근통제구역의 2개 공간이 도출되었다. 제4영역 성과관리체계와 관련된 공간은 없었다([표 3] 참조).

### 3.2 소결

도출된 41개의 공간은 정신의료기관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공간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법적인 필요시설 및 시설규격이 12개 실(시설규격 내용 속 제시된 보호실 등을 포함 시 18개)에 대해 제시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미흡함을 알 수 있다. [표 4]에서도 정신의료기관 인증과 평가 기준에서 도출된 공간과 법적 기준에서 제시된 실의 비교가 가능하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제시하는 인증기준은 모든 의료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보편적인 내용으로 구성하지만, 일부 기준 및 조사항목은 의료기관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 정신의료기관으로서의 특징이 반영된 공간은 환자 진료와 관련하여 입원실 외에도 치료프로그램실, 특수치료실, 격리실, 강박실이 있다. 격리실과 강박실은 보호실과 안정실 등과 같이 표현이 완화되어 명칭된 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진료실은 3장 환자진료가 아닌 9장 인적자원관리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는 정신병원의 진료실 내에서 환자가 의사를 폭행하는 사건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문과 비상대피공간의 확보 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신의료기관에서는 안전사고를 예

방하기 위하여 위해도구를 포함하여 환자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물품과 환경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고, 관련하여 위해도구 확인장소와 위해도구 보관장소의 확보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1]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사용하는 실명과 인증 및 평가기준에서 사용하는 실 또는 공간의 명칭이 차이가 있어 혼돈이 유발되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시행규칙의 재활훈련실이 평가와 인증 기준에서는 치료프로그램실, 작업치료실, 특수치료실과 같이 치료실로 표기되어 있다.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실의 명칭 및 범주에 대하여 규정하고 통일할 필요가 있다.

## 4. 도출된 공간별 요구사항

4장에서는 도출된 공간을 병원의 부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인증기준, 정신병원/설치과 평가기준과 의원 평가기준에서 해당 공간들을 포함하는지 여부, 그리고 법적 기준과 인증 및 평가 기준에서 요구되는 공간별 요구사항을 [표 4]와 같이 정리하였다. 이 중 정신의료기관의 특성이 반영되어 특별히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4.1 병원 전체

병원 전체에는 10개의 공간이 포함된다. 인증기준은 흡연실을 제외한 9개 공간, 평가기준 중 병원과 설치과에 대해서는 의료정보/의무기록 보관실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접근통제구역이 제외되어 총 7개의 공간이 포함되며, 의원의 경우 대피로와 비상구 2개 공간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 중 정신의료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특별히 요구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다. 비상구의 경우, 화재 안전관리의 일환으로, 폐쇄되어 있는 보호병동에서 외부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는 잠금장치를 갖추도록 되어 있다. 흡연실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의료시설 내부에는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으며, 따라서 실외에 흡연실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정신병원의 경우 금연 규제로 인한 사고 발생 우려로 흡연실 설치의 필요성이 주장되어 왔다. 흡연실 설치 시 설치 위치와 방법을 정하고 표지를 부착하는 등의 관리를 도모한다. 흡연실은 인증기준(2021년 5월 발표)에 없지만 평가기준(2021년 6월 발표)에 있는 유일한 공간인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2021년 10월 발표)에도 흡연실 설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이는 업데이트 상의 문제로 특별히 의미를 둘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 4.2 병동부

병동부에 포함되는 공간은 총 10개이다. 인증과 평가 모두 입원 환경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하는 만큼 인증기준과 평가기준의 병원과 설치과에 대해서는 모든 공간이 해당되며, 평가기준의 의원의 경우에도 감염환자 격리실을 제외한 9개의 공간이 해당된다.

[표 4] 공간별 요구사항

부서	공간	인증	평가		요구사항
		병원	병원/설치과	의원	
병원 전체	낙상발생 가능 장소	○	○	-	이동경로, 검사실, 프로그램실 등 낙상 발생 가능 장소에서 낙상예방 활동
	불만 및 고충 처리 접수 장소	○	○	-	불만 및 고충처리 접수장소 지정 및 정보 제공
	대피로	○	○	○	피난층, 안전구획, 피난시설, 피난경로 등에 대한 안전관리 및 점검 실시
	비상구	○	○	○	비상 시 자동개폐장치 등에 대한 안전관리 및 점검 실시
	금연구역	○	○	-	금연구역 지정 후 표지 부착 및 금연교육 시행 등 관리
	흡연실	-	○	-	설치 시 외부에 설치하고, 표지 부착 등 관리
	의료정보/의무기록 보관실	○	-	-	보안 및 안전장치가 있는 장소 마련 및 기록 안전관리
	개인정보보호 위한 접근통제구역	○	-	-	출입증 제공 및 출입기록 관리
	유해화학물질 보관공간	○	○	-	별도의 보관공간 마련, 경고문 부착, 보호구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등
	의료폐기물 전용 보관창고	○	○	-	내부 시야 차단 및 외부인 출입제한, 종류, 수량, 보관기간 등 표시판 설치, 소독장비 및 보호구 비치, 주 1회 이상 약물소독
병동부	위해도구 확인장소	○	○	○	입원, 귀원, 방문 시 반입 제한 물품 소지 여부 확인 공간 확보
	위해도구 보관장소	○	○	○	위해도구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수량 확인
	격리실 (보호실, 안정실 등)	●	●	●	격리실, 강박실, 보호실, 안정실 등으로 명시된 공간 마련
	강박실 (보호실, 안정실 등)	●	●	●	관찰 환경 조성 및 안전장치 구비
	병동 내 의약품 보관장소	○	○	○	규정을 마련하고 안전하게 보관 및 관리
	감염환자 격리시설	○	○	-	300병상 이상 정신의료기관에 한하여 설치, 보호실로 사용 가능
	입원실	●	●	●	면적, 병상수, 병상 간 이격거리, 개방병동 운영 등에 대한 법적기준 준수
	세탁물 수집 장소	●	●	●	별도 구획, 오염세탁물과 기타세탁물 분리 수집, 분류방법 등 게시
	세탁물 보관 장소	●	●	●	사람들의 많이 다니는 장소와 떨어진 구분된 장소 지정, 오염세탁물 있음을 표시, 취급상 주의사항 게시, 관계자 외 출입금지, 주 2회 이상 소독
	린넨실	●	●	●	세탁이 끝난 세탁물 보관 장소, 종류별 위생적 보관 환경 조성
중앙/ 외래 진료부	검체검사실	●	●	-	감염관리, 유해물질과 유해환경 관리
	영상검사실	●	●	-	감염관리, 방사능 노출 방지 및 차단
	치료프로그램실	●	●	○	단독 시행 공간 구비. 다목적 공간의 경우 접근 제한 및 공간 분리 방안 마련
	작업치료실(작업장)	●	●	-	치료에 필요한 도구·장비 및 안전장치 구비
	특수치료실	○	○	-	치료에 필요한 도구·장비 및 안전장치 구비
	주사실	○	○	○	적정한 의약품 보관
	소독물품 보관실(중앙공급실 내)	○	○	-	습도, 온도, 외부인 출입통제 관리
	오염물품 반납 창구	○	○	-	창구의 구분 및 관리
	멸균 및 소독 완료 물품 불출 창구	●	●	-	
	세척/소독/멸균실	●	●	-	의료기구의 세척, 소독, 멸균 수행에 적절한 환경 구축
	진료실	●	●	●	비상경보장치 설치, 비상문, 비상대피공간, 개인 방호도구 중 하나 이상 구비
	상담실	●	●	-	환자 상담에 적합한 시설 구축
	약제부	의약품 보관실	○	○	○
의약품 조제실		●	●	○	출입통제 및 청결 등의 관리와 조제 공간 구획
마약류 및 임시마약류 보관장소		○	○	○	잠금장치 된 철제 금고, 장소에 보관
고위험의약품 보관장소		○	○	-	안전하게 보관 및 분리보관
주의를 요하는 의약품 보관장소		○	-	-	적정온도 유지 및 모니터링
급식 시설	식재료 보관장소	●	●	○	종류별 분리보관 및 선입선출 관리가 가능하도록 환경 조성 및 관리
	조리장(오염구역/ 청결구역)	●	●	○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의 구분 및 위생관리
설비 시설	전기실	○	○	-	통제구역 표시 및 위험요인 점검 등의 안전과 위생을 위한 관리
	발전기실	○	○	-	

●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표3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기준에 포함된 실 ((표 1) 참고)

병동부에는 정신의료기관에 특별히 필요한 위해도구 확인장소, 위해도구 보관장소, 격리실, 강박실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외 실들에 대해서는 역시 정신의료기관의 특성이 반영된 요구사항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위해도구 확인장소의 경우, 환자 및 직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입원 시, 환자 귀원 시, 면회객 방문 시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반입 제한 물품의 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위해도구 보관장소의 경우, 역시 의료기관이 정한 병동 내 위해도구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수량을 확인하는 등의 관리를 도모한다. 격리실과 강박실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의 별표3 정신의료기관 시설 및 장비 기준 (이하 법적기준)'에서 규정하는 보호실에 해당한다. 격리는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해진 제한된 공간에 자의적 또는 비자의적으로 혼자 머물거나 행동공간을 제한하는 것을 말하며, 강박은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억제대나 보호복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신체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보건복지부, 2021: 348). 이러한 격리와 강박은 격리실, 강박실, 보호실, 안정실 등 명시된 공간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보호복·보호조끼·휠체어 등 이동이 자유로운 억제도구를 이용한 강박은 예외적으로 적정 장소에서 시행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격리 및 강박 모두 의료진 및 보호사가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관찰창과 같은 관찰 환경을 조성하고 자해 예방 장치와 벽면 완충재와 같은 안전장치를 구비한다.

#### 4.3 중앙/외래 진료부

중앙/외래 진료부에 포함되는 공간은 총 12개이다. 인증기준과 평가기준의 병원과 설치과에 대해서는 모든 공간이 해당되지만, 평가기준의 의원의 경우에는 치료프로그램실, 주사실, 청결물실, 진료실의 4개 공간만을 대상으로 한다.

중앙/외래 진료부에는 정신의료기관에 특별히 필요한 치료 프로그램실, 작업치료실, 특수치료실, 상담실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고, 그 외 진료실에 대하여 정신의료기관의 특수성이 반영된 요구사항이 제시되어 있다. 치료프로그램실의 경우 정신의료기관에 있어 치료프로그램은 치료 효과뿐만 아니라 사회적응력을 향상시켜 사회구성원으로서 능동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므로, 치료프로그램을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는 공간이 구비되도록 하고 있다. 한 공간을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치료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 타 환자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분리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작업치료실과 특수치료실의 경우 인증과 평가 기준에는 별도로 공간적인 요구사항은 없으며 법적 기준으로는 재활훈련실의 일부로서 치료에 필요한 도구·장비 및 안전장치를 갖춰야 한다. 상담실 역시 인증과 평가 기준에는 별도로 공간적인 요구사항은 없고 법적 기준으로는 환자 상담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정도의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진료실의 요구사항은 환자의 진료 측면이 아닌 환자에 의한 폭행 등 상황 발생 시 의료진이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 및 인력 기반을 확충하는 내용이다. 진료실에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하고, 비상문, 비상대피공간

또는 개인 방호도구 중 하나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100병상 이상의 경우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하게 되어 있다.

#### 4.4 약제부, 급식시설, 설비시설

약제부에는 5개의 공간이 포함된다. 인증기준은 모든 공간이 해당되며, 평가기준의 병원과 설치과에 대해서는 주의 요하는 의약품의 보관장소가 미포함되어 총 4개의 공간이, 평가기준의 의원의 경우 의약품 보관실과 조제실 그리고 마약류 및 임시마약류 보관장소의 3개 공간만을 대상으로 한다. 급식시설에 해당하는 공간 2개는 인증과 평가 기준의 대상 모두에 적용된다. 설비시설에 해당하는 공간 2개는 인증기준과 평가기준의 병원과 설치과에 대해서는 모든 공간이 해당되지만, 평가기준의 의원의 경우에는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

이 중 정신의료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특별히 요구되는 사항은 없다.

#### 4.5 소결

도출된 공간을 병원의 부서별로 재분류한 결과, 병원 전체적으로 10개, 병동부 10개, 중앙/외래 진료부 12개, 약제부 5개, 급식시설 2개, 설비시설 2개로 구분되었다.

정신의료기관별로 정리하면, 인증기준의 정신병원은 총 40개 공간이, 평가기준의 정신병원과 설치과는 38개, 평가기준의 정신건강의원은 19개의 공간이 해당된다. 정신병원의 경우 2021년 현재 평가는 의무사항이며, 인증은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한 기관에 대하여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것으로 자율사항이다. 하지만 평가와 인증 기준이 2개 차이인 것은 차별성이 미흡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정신병원 인증이 의무인증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각주1 참고). 현재는 열악한 정신의료기관의 실태를 반영하여 정신병원의 인증기준이 급성기병원의 인증기준과 비교할 때 조사항목이 절반 이하인 수준인데, 차츰 정신의료기관의 인증기준 역시 강화해 나감으로써 정신의료기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정신건강의원의 경우 50병상 미만의 입원실을 두는 경우 평가를 받는데, 평가기준이 적용되는 공간은 병동부에 집중되어 있고 그 외 부서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공간들에 대하여 평가하고 있다.

도출된 공간별 요구사항은 환자의 안전과 감염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대부분 해당 공간을 별도로 구분하여 마련할 것과 규정을 만들어 유지관리하도록 하는 수준이다. 분석결과 위해도구 보관장소, 격리실, 치료프로그램실과 같이 실 자체가 정신의료기관에 특별히 필요한 실에 대한 요구사항이 아닌, 해당 실이 정신의료기관에 특별히 필요한 실이 아닌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요구사항이 제시된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병원 전체에서는 비상구의 경우 폐쇄되어 있는 보호병동에 대한 요구사항이, 중앙/외래 진료부에서는 진료실의 요구사항 중 의료진의 보호를 위한 비상경보장치, 비상문, 비상대피공간, 개인 방호도구, 보안 전담인력에 대한 요구사항

이 제시되어 있는 정도이다. 향후 정신질환자의 행태를 고려하여 공간에서의 요구사항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정신질환 증상에 따른 인지기능 손상과 항정신성 약물 투여 후 어지럼증으로 인해 낙상사고의 위험이 더욱 높은 정신의료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낙상발생 가능 장소에 대한 요구사항을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 5. 결론

우리나라의 정신질환 유병률의 증가와 함께 정신의료기관의 환경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정신질환자는 재원기간이 길고 특히 물리적 환경에 민감하다는 측면에서 정신의료기관의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법적인 기준이 미비하고 별도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정신의료기관의 의뢰서비스에 관하여 가장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정신의료기관 평가와 인증 기준에서 언급되는 공간을 추출하고 그 요구사항을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그 수준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많은 기준과 평가항목을 가지는 인증기준 내 공간을 도출한 결과 총 41개의 공간이 도출되었다. 제1영역의 가치체계 3개, 제2영역의 환자진료체계에서 15개, 제3영역의 조직관리체계에서 23개이며, 제4영역 성과관리체계와 관련된 공간은 없었다. 도출된 공간들은 정신의료기관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공간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법적인 필요시설로서 12개 실이 제시되었다는 것이 상당히 미흡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법적인 필요시설과 인증 및 평가기준에서 사용하는 실 또는 공간의 명칭이 차이가 있어 혼돈이 유발된다. 실의 명칭 및 범주에 대하여 규정하고 통일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도출된 공간을 병원의 부서별로 재분류한 결과, 병원 전체적으로 10개, 병동부 10개, 중앙/외래 진료부 12개, 약제부 5개, 급식시설 2개, 설비시설 2개로 구분되었다.

셋째, 정신의료기관별로 정리하면, 인증기준의 정신병원은 총 40개 공간이, 평가기준의 정신병원과 설치과는 38개, 평가기준의 정신건강의원은 19개의 공간이 해당된다. 정신병원의 인증과 평가 기준의 차이가 미미한 수준인데, 정신건강의료기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증기준부터 급성기병원 수준으로 점차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넷째, 도출된 공간별 요구사항 중 실 자체가 정신의료기관에 특별히 필요한 실이 아닌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요구사항이 제시된 경우는 비상구와 진료실로 매우 제한적이었다. 향후 다른 실들에 대해서도 정신질환자의 행태를 고려하여 공간의 요구사항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현재 우리나라의 정신의료기관을 인증 및 평가하는 기관이 요구하는 정신의료기관의 공간과 요구사항의 수준을 가늠해 보는 기초자료로서 의미를 가진다. 향후 실제 이루어진 인증 및 평가의 결과를 참고하여 다수의 정신의료기관

에서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등의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하여 요구사항의 개선 및 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국립정신건강센터, 2021, "정신건강실태조사보고서"  
 김동경, 정인영, 2021, "연령대별 정신질환 발생 추이와 시사점: 코로나 19의 잠재위험 요인", KIRI 고령화 리뷰, 제39호, 1-8.  
 김상복, 윤재희, 2017, "국내 정신병원의 건축계획적 특징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 정신병원과 일반 종합병원의 비교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종합논문집 19(1), 153-161.  
 대한정신건강재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21, "정신병원 인증 및 정신의료기관 평가제도 성과분석 연구"  
 보건복지부, 2021, "정신건강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21, "3주기 정신병원 인증기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21, "4주기 정신의료기관 평가기준 -정신병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21, "4주기 정신의료기관 평가기준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건강증진재단, 2011, "정신의료기관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실태조사 및 지표(안) 개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 <https://www.koiha.or.kr>  
 Shepley, Mardelle McCuskey; Pasha, Samira, 2017, "Design for Mental and Behavioral Health", Routledge, Oxon and New York.

접수 : 2022년 02월 16일  
 1차 심사완료 : 2022년 02월 23일  
 게재확정일자 : 2022년 03월 03일  
 3인 익명 심사 필